

주 의 요 구(약식)

일련 번호	39	소관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조치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p>제 목 : 우수조달물품 납품검사 시 제품 성능규격 확인소홀</p> <p>1. 내 용</p> <p>가. 업무 개요</p> <p>◇◇ 등 41개 기관¹⁾은 각종 시설공사(건축공사, 바닥보수공사 등)를 추진하면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 ○○, △△의 벽돌(미장벽돌 또는 바닥벽돌)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하여 납품받은 후 공사 자재로 사용하여 시공하였다.</p> <p>나.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p> <p>「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국가기관 및 공공기관²⁾의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p> <p>조달청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는 기관³⁾으로 보낸 계약서류(분할납품요구서)에 따르면 위 3개 업체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이고 물품을 구매한 기관에서 납품검사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p>					

또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1조 및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물자를 구매할 때 납품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제11조 제7항에 따르면 검사 및 시험방법에 대한 사항은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를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검사공무원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인 ‘규격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물품구매(제조) 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 금액이 건당(요구 금액 포함)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제품 규격에 대한 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등 41개 기관은 각종 시설공사(건축공사, 바닥보수공사 등)를 추진하면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 ○○, △△의 미장벽 돌 또는 바닥 벽돌을 2,0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구매하여 납품받았다.

따라서 ◇◇ 등 41개 기관은 계약 금액이 건당 2,0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벽돌의 납품 검사 시 제품 외관은 물론 [표]의 제품 성능규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한해서만 대가를 지급하고 공사 자재로 사용하도록 해야 했다.

[표] 제품 성능규격 주요 내용(3개 회사)

항목	□□(기준 : 2020년)		○○(기준 : 2020년)		△△(기준 : 2021년)
	미장벽돌	바닥벽돌	미장벽돌	바닥벽돌	미장벽돌
압축강도	30Mpa이상	35Mpa이상	30Mpa이상	55.2Mpa이상	30Mpa이상
흡수율	9.0% 이하		7.0% 이하		9.0% 이하
휨강도	-	5.5Mpa이상	-	최소6.5Mpa이상, 평균7.0Mpa이상	-
동결융해후 휨강도	-	5.5Mpa이상	-	6.0Mpa이상	-
기타	백화현상 이상 없을 것 등		납, 구리 함량 1.0미만 등		납, 구리 함량 1.5미만, 탈취시험 관련 50이상 등

자료: 우수조달제품 규격서 재구성

그런데 ◇◇ 등 41개 기관은 [별표] ‘41개 기관 우수조달벽돌 구매현황 및 성능규격검사 실시 여부’ 와 같이 납품검사를 실시하면서 물품의 수량만 확인하였을뿐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해당 벽돌의 성능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납품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납품받은 우수조달물품이 성능규격을 충족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채 공사에 그대로 사용되었다.

2. 조치할 사항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장은 향후 우수조달물품을 납품받아 시공할 때 성능규격 충족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 회보 여부: 회보 불필요

- 1) 최초 성능규격 충족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58개 기관에 의견서를 보냈으나 17개 기관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소명됨
-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 3) 「물품 구매(제조) 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조제1호에 의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단체, 공기업 등을 말하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